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525256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6,987,550원 및 그 중 65,026,872원에 대하여 2022. 8. 2.부터 2022. 10. 1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1)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1,055,138원 및 그 중 19,094,460원에 대하여 2022. 8. 2.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75,382,2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5,382,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B에 대한 청구

가. 사건의 표시

1) 피고 A: 2021. 12. 31.자 제1 신용보증서 및 2022. 1. 3.자 제2 신용보증서에 따른 원고의

2022. 8. 2. 대위변제 구상금 채무

2) 피고 B: 제1 신용보증서 책임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상환약정금 및 제2 신용보증서 연대보증 채무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 1) 원고는 피고 A에게 2021. 12. 31. 제1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2022. 1. 3. 제2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2) 피고 A과 피고 C는 2022.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 4)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22. 8. 2. D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45,932,412원을 변제하고, E은행에게 제2 신용보증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19,094,460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 5)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1,960,6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이전에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② 위 처분행위는 피고 A의 재정 부실화 시점에 발생하였으며, ③ 그 후에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되었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A이 2022.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① 피고 A과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 은행을 방문하는 등 피고 A의 채무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8억 원으로, 피고 A이 2년 전 매수한 14억 원에 비해 다액이어서 거래조건이 피고 A에 유리한 점, ③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이후 피고 A의 문제를 알게 되어 회사의 대표자 등을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A의 관계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인 공장부지 등이므로 사업 자산을 자체를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피고 A의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무와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상회복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채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520,000,000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사실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이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한다.

4) 가액배상금액의 계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66,987,550원(= 대위변제금 합계 65,026,872원 + 법적절차비용 1,960,678원) 및 그 중 65,026,8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8.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3. 12.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를 계산하면 75,382,251원[= 66,987,550원 + 8,394,701원(= 65,026,872원 × 589/365 × 0.08)]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가액배상금액 75,382,2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75,382,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근규

별지